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2. 1.



안영란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명자: 안영란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 그리고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2003
----------	----------

발의일자: 2022. 1. 24.  
발의자: 안영란, 조복희, 박정환,  
박왕규, 윤권근

## 1. 제안이유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6조
- 나.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현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리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 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

양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설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